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3일, 조경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11. 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11.) 상정, 축조심사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경태의원)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농장주에 의해 방치된 소 63마리가 굶어 떼죽음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다시 집중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동물학대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적정한 관리와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황충연)

가. 동물학대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개정안은 동물학대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신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 보호, 복지 증진 및 생명존중의 국민 정서 함양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동물학대 행위의 특성상 외부 제보·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동물학대행위(제10조 위반)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나아가 동물보호법의 집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와 유사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 체계를 보완하고 은밀한 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이 추구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신고포상금 제도는 허위·보복성 신고나 과잉신고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부담, 예산 집행의 불확실성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재정적 비용 간의 비례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제도 운영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물학대 행위가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포함되어 있고, 동법 제26조의3에 따라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 신설은 제도 중복과 현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동물학대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재정적 비용 간의 비례성, 정책현장의 집행가능성 및 기존 법체계에서의 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음.

나. 동물 도살과정에서의 혐오감·공포·스트레스 유발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신설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살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고통·공포·스트레스 유발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법 제13조제1항은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공포·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스법·전살법 등 방법을 이용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동물의 도살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이나

학대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법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동물복지 향상과 생명존중 의식 제고라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13조제1항 전단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행위’는 현행법 제10조에서도 이미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중한 처벌이 이미 가능함.

제13조제1항 후단의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공포·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도축장 등 현장에서 해당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잔인한 방법’, ‘혐오감을 주는 행위’, ‘불필요한 고통’과 같은 표현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어서, 행위자가 어떤 행동이 금지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 형벌 규정으로 적용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판시를 하였음(헌법재판소 2011.10.25. 2010헌가29 결정 등).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제도에서도 잔인한 도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추가 처벌조항 신설은 법적 중복과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실질적인 입법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